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370호 2018. 7. 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5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64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14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북항로 229 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7. 0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07-0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43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29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6-33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29 (경서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6-34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31 (경서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4-12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16-36 (경서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1-12	인천광역시 서구 칠천왕로 12 (석남동)	20090922	옛날 이 곳에서 바다까지 칠천보 정도 되어 칠천왕이라고 불리어 왔으므로 이를 따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1-16	인천광역시 서구 칠천왕로 14 (석남동)	20090922	옛날 이 곳에서 바다까지 칠천보 정도 되어 칠천왕이라고 불리어 왔으므로 이를 따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71-3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 40-24 (대곡동)	20130730	자연부락 명칭 반영	
8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5-19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28번안길 4 (금곡동)	20081231	완정로228번길의 안쪽으로분기되어있는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9-3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26-1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800-2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15 (연희동)	20110630	중봉대로 시작점부터 약5860m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주민의견 반영	
1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2-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25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2-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102번길 2 (오류동)	20121025	검단로 시작지점부터 1,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7번길 77 (원창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2-22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10-24 (원창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2,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8-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안길 102 (원창동)	20131202	북항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9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25 (경서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67-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7 (경서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4-5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11-10 (가정동)	20150130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2-8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196번안길 4-5 (원창동)	20171025	원석로19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60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62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9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신축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평생교육센터의 이용대상 규정
-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이용대상에 관한 규정 :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과 서구의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 각 50%로 구성한다.”
 - ▶ 이용대상 “각50%로 구성한다.”의 사유 : 인천광역시와 협의사항임.
 - 평생교육센터 부지매입 지원 : 매입비 4,865,139천원중 구비:2,432,139천원, 시특별교부금:2,433,000천원
 - 평생교육센터 운영비용 지원 : 운영비(약 10억원/년)의 절반 지원

3.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자립지원과: 전화 560-4311, 팩스 560-27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위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서식 제출도 가능합니다.

- 붙 임 : 1.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중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둔다.
-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⑤ 평생교육센터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과 인천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 각 50퍼센트로 구성한다.

⑥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교육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선정

2.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와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심의·의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이용자인 경우
2.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계법령 발췌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조례 근거법률

□ 법률

○ 발달장애인 정의 및 구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시행령 제정이 없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1] <개정 2014.6.30>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 참고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

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 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평생교육 관련 법률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 제2018-95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8. 7. 2. ~ 2018. 7. 16.(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60저0765외 7건(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60저0765	이제*	2018.06.22	
2	46노4408	박노*	2018.06.20	
3	59나4697	신대*	2018.06.18	
4	30러1302	이호*	2018.06.14	
5	10조3587	주식회사 에이치타*	2018.06.12	
6	인천75아1050	주식회사 하나팬더관광여행*	2018.06.12	
7	94부8229	강상*	2018.06.01	
8	85버7954	김경*	2018.05.31	2018.06.08. 해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964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사유
○ 조례개정으로 인한 행정동 명칭 변경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및 폐기년월일 : 2018년 7월 1일
3.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공인 내역
“별첨 참조”

○ 공인(전자이미지) 등록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검단동장인	조례개정으로 인한 행정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검단동장인 / 민원전용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블로대곡동장인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블로대곡동장인 / 민원전용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원당동장인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원당동장인 / 민원전용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당하동장인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당하동장인 / 민원전용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오류왕길동장인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오류왕길동장인 / 민원전용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 공인(전자이미지) 폐기 내역

폐기 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검단1동장인	조례개정으로 인한 행정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검단1동장인 / 민원전용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검단2동장인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검단2동장인 / 민원전용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검단3동장인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검단3동장인 / 민원전용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검단4동장인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검단4동장인 / 민원전용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검단5동장인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검단5동장인 / 민원전용	조례개정으로 인한 동 명칭 변경	2018년 7월 1일	